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 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**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**
 - 리츠를 활용한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
 -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을 통한 공동체주거모델 제시 등

다. **출자의 필요성**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**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**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**

다. **합 의 : 해당사항 없음**

※ **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설정환(☎2133 - 7020)**

[붙임1] 서울주택도시공사 개요

구 분		서울주택도시공사
설립목적		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
설립일		'89. 2. 1.
대표자 (임기)		김세용 ('18. 1. 1. ~ '20. 12. 31.)
조직		7본부, 6실, 2원, 26처, 1단, 87부, 14센터
임원 현황	정원	15명 (비상임이사 포함)
	현원	14명 (비상임이사 포함)
정원내	정원	1347 (임원 포함)
	현원 (결원)	1302 (-45)
	%	100%
정원외	무기	65
	기간제	64
	단시간	-
자본금	수권	80,000억원
	납입	59,606억원(2019. 7. 31. 기준)
'19 예산		49,908억원
'19 市 출자금		4,667억원
주요사업		임대주택 공급 '19년 SH공사 공적임대주택 추진계획 : 11,452호 - 건설형 : 2,352호 - 매입형 : 2,600호 - 임차형 : 4,500호 - 공공지원 : 2,000호 * (2018~2022) 市 공급 목표 : 24만호
		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-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- 수요자 맞춤형 주택 설계 - 가치지향적 고품질 주택건설 - 시민체감형 공간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개선 도시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포용도시 구현 -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기반 조성 - 도시활력 증진으로 정주환경 기준선 제고 - 거점 개발 중심의 지역 동반성장 도모
		임대주택 유지·보수 등 관리 - 497개 단지 194,662세대('18년말) '19년 주택신규공급 : 14,887세대 - 분양 684 - 임대 14,203 '19년 택지신규공급 - 8개 지구(고덕강일, 마곡, 은평, 위례, 향동, 내곡, 신내, 오금) - 84필지 396,487㎡

[붙임2]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출자사업(출자금) 내역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2020년 (출자금)	산출내역
일반(다가구) 매입임대주택 사업	100,500	134,000,000원*1,500호*50%
사회주택 공급(토지지원리츠 등)	53,200	① 150,000,000원*1호*800호*1/3 ② 120,000,000,000원*1% ③ 4,000,000,000원*3개동
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	9,500	19,000,000원*1,000호*50%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	459,050	신혼부부1 매입임대(시비) : 19,000,000원*2,200호*50% 신혼부부1 매입임대(시비) : 230,000,000원*1,500호*95% 신혼부부Ⅱ 매입임대(시비) : 460,000,000원*300호*80%
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	1,000	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토지매입비(2필지*5억)
공공원룸주택 매입·건설 공급	85,000	85,000,000원*1,000호
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(민선5기)	17,785	85㎡ 이하(SH공사 출자) : 17,785,000,000원